

외국대학과 학생 교류 및 학점 교환에 관한 규정

제정: 2026.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5조에 의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간에 맺은 협정에 따라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승인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하는 교환학생 또는 연수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환학생”은 교환협정에 의해 파견되는 학생
2. “연수생”은 총장이 승인한 외국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3.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교환협정에 의해 선발 파견되는 학생이 본교에 등록하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프로그램
4. “계절수업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연수생이 계절수업 중에 본교와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대학의 단기 프로그램에 참가 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5. “온라인 학점교류 프로그램”은 본교와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대학의 온라인 정규 강의를 이수하고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4조 (교류대학 및 연수프로그램) ① 교류대학은 본교와 교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스쿨 원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승인할 경우 교환대학에서 수학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소속 스쿨 원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5조 (지원 자격) 외국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교환 학생 및 연수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환학생: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 단, 최종 학기 학생 및 재학 중 글로벌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제외 함.
연수생: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
2. 학업성적이 총 평점 평균 3.0점/4.5점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의 최소 요구 능력을 충족하는 자.
4. 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6조 (지원 절차 및 시기) ① 교환학생 및 계절수업 학점인정 프로그램 참여 연수생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스쿨 원장의 허락을 받아 대외협력처에 제출한다.

1. 지원신청서
2. 수학계획서
3. 스쿨 원장 추천서
4.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한 필요 서류

② 교환학생은 정규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계절수업 학점인정 프로그램 연수생은 프로그램 개시 1개월 전까지 대외협력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선발절차) ① 교환학생 및 계절수업 학점인정 프로그램 연수생 선발은 스쿨 추천을 통해 대외협력처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단, 선발된 교환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는 교류대학에서 결정한다.

② 정규학기 교환학생 정원은 전공단위별 모집정원의 10% 이내로 하고, 연수생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8조 (비용) 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은 재학 중인 본교에 납부하며, 교류대학에 납부하지 않는다.

② 계절수업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경우 본교 계절수업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외국대학의 교류 프로그램 등록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③ 각 프로그램의 제반 수속 비용 및 기숙사비, 생활비 등은 학생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수학생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학기간) ①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한 학기, 최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계절수업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수학 가능하고, 온라인 학점교류 프로그램은 학기 당 1과목까지 수학 가능하다.

제10조 (취득학점 및 학기의 인정) ① 교환학생, 연수생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되, 우리대학 이수학점으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공별 최소졸업학점 ÷ 수업연한학기수)×이수학기수 이내
2. 계절수업 학점인정 프로그램: 2학점 이내×이수학기수 이내 (해당 학점은 직전 일반학기에 포함)
3. 온라인 학점교류 프로그램: 3학점 이내×이수학기수 이내

② 교환학생, 연수생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량평균환산에서 제외한다. 계절수업 학점인정 프로그램과 온라인학점교류 프로그램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패스제(P/F)로 평가한다.

제11조 (학점인정 절차) ① 교환학생 및 연수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학대학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 및 교과목의 인정은 해당 스쿨 성적사정회의 심의에 의한다.

제12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수학계획서

전공			성명	
지원동기				
주요 학습영역				
수강 예정 과목	연번	수학 대학 과목명	수강 희망 사유	본교 유사 과목 명
	1		간략 기술	
	2			
	3			
	4			
	5			
	6			
	7			
	8			
	9			
10				

